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

최신동향 보고서 2019년 12월 2주





CNIL의 공공 데이터 공개 및 재사용 가이드라인 분석

< 목 차 >

- 1. 개요 및 배경
- 2. 행정문서의 온라인 공개를 위한 조건
- 3. 비식별 조치의 방법
- 4. 시사점

1. 개요 및 배경

- ▶ 많은 국가들이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보유 문서의 공개를 확대하는 가운데, 행정문서의 공개 및 재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대두
 -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CNIL(Commission nationale de l'informatique et des libertés)과 행정정보공개 담당조직인 CADA(la Commission d'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)는 이에 부응하여 행정문서의 온라인 공개 및 재사용을 위한 조건과 지침을 제시한 가이드라인(guide pratique de la publication en ligne et de la réutilisation des données publiques)을 배포
 - 동 가이드라인은 2019년 봄 초안 공개 후 공식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9년 10월 17일 발표되었으며, CNIL과 CADA은 추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 데이터(open data)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계획
 - 행정부와 일반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동 가이드라인은 EU GDPR과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(La 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de 2016)의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들을 반영



- 한편, CNIL은 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행정문서의 익명화에 관한 자료(<u>L'anonymisation</u> des données, un traitement clé pour l'open data)를 함께 배포
- 본 보고서에서는 동 가이드라인과 CNIL의 자료를 종합하여, △행정문서의 공개 및 재사용을 위한 요건 △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문서 배포 시 유의점 △비식별화 방법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분석

2. 행정문서의 온라인 공개를 위한 조건

- ▶ 프랑스의 행정문서는 CRPA(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es administrations,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)에 의거하여 보호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 공개와 재사용이 가능
 - CRPA에 의해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데이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문서를 처리한 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
 - 따라서, 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행정문서의 공개에 앞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 처리나 식별자 제거 등의 비식별 처리 과정 필요
- 비밀보장 대상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처리가 요구되는 행정문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
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, 해당 문서를 통해 처리된 사항에 대한 손상 또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 때
 - 예컨대 정부의 심의, 국방기밀, 외교정책 수행 내용, 국가 안보 및 공공 보안, 정부의 정보 시스템 보안, 신용, 법원 소송의 내용과 절차(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), 환경법(Code de l'environnement) 제 124(4)조에 따라 법으로 보호되는 내용¹ 등이 대표적인 사례
 -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일 때
 - 해당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, 의료기밀 유지, 비즈니스 비밀 보호의 원칙을 저해하는 경우가 해당되며, 단 비즈니스 비밀 보호의 경우 반독점과 시장경쟁에 관한 행정적 목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
 - 성명이 적시되어 있거나 신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의 가치에 대한 판단 또는

¹ 이러한 정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며, △공기, 대기, 물, 토양, 육지, 풍경, 자연 지역, 해안 또는 해양 지역 및 생물학적 다양성 및 상호 작용을 포함한 환경 요소의 상태 △상기 항목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, 에너지, 소음, 방사선, 폐기물, 배출, 유출 및 기타 배출물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정보 △환경 관련 의사 결정, 활동 또는 요소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는 건강상태, 사람, 건물 및 문화유산의 안전 및 생활 조건 △이러한 결정과 활동에 사용된 비용 편익 분석 및 경제적 가정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



평가를 다룬 문서가 해당되며, 자연인에 대한 평가, 성과급 등 보수의 수준과 구성 요소, 대회와 시험 성적표, 공무원 평가 등급, 보직변경 결정의 근거가 된 판단 결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

- 정보주체 개인의 특정 행동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 당사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, 특정 행동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나 행정당국 혹은 공무원에게 개인이 제기한 불만이나 증언 내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
- ▶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문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²
 - 법률에 의해 해당 행정문서 전체 공개가 승인된 경우³ 온라인으로 배포가 가능하며, 다만 문서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를 익명처리 없이 온라인으로 출판할 수는 없음⁴
 -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공개가 가능하며, GDPR 제4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
 - 공공 영역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공공 기관의 감독을 받는 문서 등 CRPA 312(1)(3)조에 제시된 행정문서의 경우 공개 가능

3. 비식별 조치의 방법

- ▶ 행정부가 공개 가능한 문서(또는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)를 온라인에 게시 및 배포하는 경우, 익명화(anonymisation) 처리 의무가 적용되므로⁵ 행정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된 이후 공개하는 것이 필요
 - 익명화된 데이터는 더 이상 정보주체 개인과 연결할 수 없으므로, 해당 개인정보의 배포와 재사용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
 - 익명화 프로세스는 재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로 인한 데이터 품질의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향후 특정한 유형으로만 재사용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

² 행정문서에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닌 개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를 요청한 사람에게 공개가 가능

³ CRPA 312(1)에 언급된 상반입법조항(disposition législative contraire)에 의거함

⁴ 이에 대해 CNIL은 문서 전체가 공개되도록 규정한 입법 조항과 관련하여 행정부가 문서의 비식별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

⁵ CRPA 312(1)(2) 참조



- ▶ 적절한 익명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을 권고
 -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요소 및 쉽게 재식별할 수 있는 희귀 식별자를 삭제할 것
 - 예컨대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주체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며, 특히 '100세 이상' 등의 희귀한 식별자가 있는 경우 개인 식별 및 재식별 우려가 더욱 증대
 -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중요 정보와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쓸모없는 정보를 구별할 것
 -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세밀성(fineness)와 관련하여, 가장 이상적인 수준과 용인 가능한 수준을 정의하고,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
 - 예컨대, 정보의 세밀성이 중요한지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결정
- ▶ 이상의 절차를 거쳐 ①무작위화(randomisation) 방법과 ②일반화(généralisation) 방법 등 두 가지 유형의 비식별화 방식6 중 필요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기술 선택은 데이터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진행
 - 첫째, 무작위화(randomisation) 방법은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를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(veracity, 진실성 또는 정확성)을 임의로 낮춤으로써 특정 데이터와 개인 간의 강한 연결성(strong link)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
 - 예컨대,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낮추기 위해 준식별자인 개인의 연령에 임의의 값(random value)을 더하여 특정 개인과의 강한 연결성을 제거
 - 둘째, 일반화(généralisation)는 데이터 값을 보편적인 범위 또는 의미로 변경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, 해당 데이터세트와 여타 데이터세트 간의 상관관계 추론을 제한
 - 예컨대 개인의 생년월일이나 연령이 포함된 파일에서 이를 "20대", "30대", "40대" 등으로 범주화하여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처리
- ▶ 익명화의 효과 또는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EU 29조 작업반이 2014년 4월 발표한 「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(Opinion 05/2014 on "Anonymisation Techniques: WP 216)」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7
 - 첫째, "여전히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가?"라는 기준에 의해, 해당 데이터세트에서 개인을 따로 식별해낼 수 없도록 처리했는지 확인
 - 둘째, "동일한 개인에 관한 별도의 데이터세트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가"라는 기준에 의해, 특정한 식별자가 포함된 서로 다른 데이터세트들 간의 연결을 통한 재식별이 불가능한지 확인

⁶ 우리정부도 무작위화 방법과 일반화 방법으로 대표되는 비식별화기술 17종을 공개한 바 있음 7 우리정부도 비식별 적정성 평가기준으로 k-익명성(k-anonymity), I-다양성(I-diversity), t-근접성(t-closeness)을 제시한 바 있음



- 셋째, "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가?"라는 기준에 의해, 개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개인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확인
- 비식별 처리 후 온라인 공개된 경우에도, 해당 데이터세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상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세트를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

4. 시사점

- ▶ CNIL과 CADA의 동 가이드라인은 행정문서 및 공공 데이터 공개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이해 및 실무 적용을 위한 것으로서, 추후 공개될 관련 주제들과 함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
 - 공공 데이터 공개 및 재사용의 전제가 되는 비식별화 방식은 추후 재식별 기술의 발전 등에 부합한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데이터 재사용 과정의 악용 가능성 제한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 - 이와 같은 문제의 복잡성과 익명화 기술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, 공공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

Reference

- 1. CADA, CNIL, "Guide pratique de la publication et de la réutilisation des données publiques open data", 2019.10.17.
- 2. CNIL, "L'anonymisation des données, un traitement clé pour l'open data", 2019.10.17.
- 3. CNIL, "Open data : la CNIL et la CADA publient un guide pratique de la publication en ligne et de la réutilisation des données publiques", 2019.10.17.
- 4. Next Impact, "Publication du guide CNIL/CADA sur l'Open Data", 2019.10.18.
- 5. WP 29, "Opinion 05/2014 on "Anonymisation Techniques: WP 216", 2014.4월





발행 일 2019년 12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정책기획팀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(301-2) Tel 061-820-1946

- ▶ 본 동향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- ▶ 해외개인정보보호동향보고서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,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